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제28조의3제1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

제3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심의업무 등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제37조의2의 제목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 “(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보,”를 “정보(제1호부터 제3호,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에 한정한다),”로 한다.

별표 1의2에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일 것

별표 3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) ① (생략)	제19조(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3(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) ① ~ ⑩ (생략)	제28조의3(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
⑪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⑪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<u>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</u>
⑫ · ⑬ (생략)	⑫ · ⑬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신용정보협회의 업무)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5. (생략)

제37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
정보의 처리) ① 금융위원회(제3
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
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금
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
음 각 호의 사무(보호위원회는
제8호, 제8호의2, 제8호의5, 제1
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하
다)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
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
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
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
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
처리할 수 있다.

제36조(신용정보협회의 업무) 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신용정보회사, 본인신용정보
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
업무에 관한 광고의 심의업무
등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
기 위한 업무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제37조의2(민감정보 및 개인식별
정보의 처리) ①-----

----- 정보(제
1호부터 제3호, 제6호부터 제14
호까지의 사무에 한정한다). --

1. ~ 14. (생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데이터정책과	디지털혁신총괄팀 디지털혁신감독팀
연락처	02-2100-2625	02-3145-7162 02-3145-7180